

2024년도 제3회 담양군의회 일반임기제(정책지원관)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4년도 제3회 담양군의회 일반임기제(정책지원관) 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4년 9월 27일

담양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임용 분야	임용직급	인원	근무기간	담당업무
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	정책 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	채용일로 부터 2년	- 조례 제정개정폐지,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조사 수집·분석 지원 -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-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-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-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·분석 지원 -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, 같은법 시행령 제36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, 제27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」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「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행 시행예정일)

가. 공통요건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《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》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《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》

※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
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《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》

※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- 응시연령 : 20세 이상(2004.12.31. 이전 출생자)
- 주소지·성별 : 제한없음
 - 다만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
- 국 적 : 대한민국(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)

나. 직무분야 자격요건

임용분야 / 임용직급	자 격 요 건
	○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
정책지원관	[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]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*공공기관, **출자·출연기관, 대학교, 대학원, 연구소(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) 등에서 행정, 법무, 재정, 정책기획·개발·분석, 감사, 지방자치, 통계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* 공공기관 : 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cleaneye.go.kr) 기준 ** 출자·출연기관 : 2024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(행정안전부) 기준
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

- ◆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 제5항)
- ◆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**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**(불분명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)
- ◆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만을 인정하며, 인턴·사무보조·행정지원·연구보조·단순노무·단순지원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

- ◆ 전임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(예시 : 주20시간 근무) 되어야 하며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
- ◆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.

4. 보수수준

- 근무 거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(연봉 및 연봉한계액) 및 2024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- 근무시간 : 1일 8시간(09:00 ~ 18:00), 주40시간 근무
- 신규 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당해 등급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 결정 (단위 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비 고
7급(상당)	66,396	47,157	주40시간(5일)

- ※ 연봉외 급여(수당)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고용노동법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)

5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심사방법 : 제출서류를 통해 자격요건·경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서면 심사
- 합격자 결정 : 임용분야 자격요건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처리

- ※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: 재공고
 -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, 기존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대 상 : 1차 시험 합격자
- 시험방법 : 개별 면접,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
- 평정항목 : 5개 항목으로 평정
 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※ 불합격기준

- 면접위원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- 면접위원 과반수가 위 5개 평정항목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

다. 합격자 결정 및 발표

- 합격자 결정 : 2차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
 - ※ 동점자 발생시 관련분야 경력기간, 연장자 순으로 결정
 - ※ 신원조회, 응시자격 검증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 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 -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.
- 합격자 발표 : 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
6. 시험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임용시험 공고	2024. 9. 27.(금) ~ 10. 8.(화)	담양군의회 홈페이지, 나라일터 공고
원서교부·접수	2024. 10. 4.(금)~ 10. 8.(화)	방문 또는 우편 ※공휴일 접수불가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2024. 10. 15.(화)	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(합격자 개별 통보)
면접시험	2024. 10. 18.(금)	
최종합격자 발표	2024. 10. 22.(화)	담양군의회 홈페이지 공고 (합격자 개별 통보)

※ 업무추진 상황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
7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원서교부

- 담양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dycouncil.go.kr>) “고시공고”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(응시원서, 이력서 등)을 다운로드받아 사용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10. 4.(금) ~ 10. 8.(화) ※ 공휴일 접수불가
- 접 수 처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 061-380-3531)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(익일특급) 접수
 - 방문 접수 : 평일 근무시간 09:00~18:00(12:00~13:00제외) 내에만 접수 가능
 - 등기우편 접수 :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만 인정

※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

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

-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: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합니다.
-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접수 마감일(18:00까지)내에 인사담당자에게 우편발송 사실을 반드시 유선(☎ 061-380-3531)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.
(서류 분실 방지 목적)

- 우편봉투에는 ‘일반임기제(정책지원관) 임용 응시원서 재중’ 문구를 표기하기 바랍니다.
 -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을 구입하여 동봉하되, 응시원서에 부착 금지
 -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유선이나 핸드폰 문자로 통보하오니 연락처 정확히 기재
 -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잘 숙지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:00까지입니다.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하며, 접수 마감시간까지 보완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됩니다.
- ※ 우편접수 주소 : 우)57339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,
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자

8. 제출서류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1호서식) 1부
- ② 응시원서(별지 2호서식) 1부
 - 응시수수료 : 7,000원(수입증지)
 - * 응시수수료는 담양군청 민원과에 납부 후 응시원서에 인증
 - *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
 - * 등기우편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‘우체국 통상환증서’로 대체
 - *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불가
- ③ 이력서(별지 3호서식) 1부
 -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제출 증빙서류(경력·재직증명서 등)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경력기간 미인정)
- ④ 자기소개서(A4용지 2매 내외) (별지 4호서식) 1부
- ⑤ 직무수행 계획서(A4용지 5매 내외) (별지 5호서식) 1부

⑥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

-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본 제출 가능
- 대학원 이상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⑦ 주민등록 초본 1부 : 병역사항, 개명사항 포함

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6호서식) 1부

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(별지 7호서식)

⑩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(별지 8호서식)

⑪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(재직)증명서 사본 또는 원본 1부.(사본 제출시 원본 지참)

- **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**

(증빙자료 미제출시 불인정)

- 기관 발급서식이 없을 경우 서식(별지10호)에 내역 작성 후 기관장 직인 날인
- **발행기관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 업무, 상근 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**(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)

*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**담당업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(업무분장표 등) 추가 제출**(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) : 별도 서류에는 서류 확인(발급)자의 직위, 성명, 연락처 기재

* 주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단위 근무시간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제출(미제출시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)

- **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보수내역,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**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 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-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
-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(면접)시험 예정일 기준임.

⑫ 관련분야 경력사항 증빙서류 1부

-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(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 보험관리공단 발급)
 -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종
- 소득금액증명서 (국세청 발급) 1부
 - 무인민원발급기, 인터넷(www.hometax.go.kr),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
 - 발급신청시 과세기간은 관련분야 근무기간(연도) 전체 설정
-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, 국세청의 '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' 추가 제출

- ## ⑬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(상훈, 연구실적, 자격증 등)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, 연구실적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(공증 필)을 첨부하여 제출
 -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 - 논문,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내 국문 요약 1부.

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
▶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여 인정하며(단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공고일 이전 발행서류는 가능) 원본으로 제출 ▶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 ▶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류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
9. 불합격자의 서류 반환 청구

- 청구기한 : 최종합격일로부터 1개월까지
- 청구방법 : 반환청구서(별지 9호서식) 작성 제출
[우편 또는 팩스(061-380-3590) 또는 방문 제출]
- ※ 청구기한 내 반환 미청구 시 채용서류는 파기될 수 있음.

10. 유의사항

-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작성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전형결과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처리 또는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서류 발급 및 사실 관계 확인 후 응시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.
※ 단, 최종합격자 발표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
-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 접수일,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합니다. 이 경우

당초 원서접수 기간 중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.
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, 응시자격요건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, 임용결격 사유,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복무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를 적용합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임용령에 의한 시험,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.
- 현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전부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 발생 시 담양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dycouncil.go.kr>) ‘고시공고’란에 공지 및 응시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 인사담당자(☎061-380-3531)

임용예정분야 직무기술서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정책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)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담양군의회	의회사무과

담당업무	· 조례 제정·개정·폐지,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조사·수집·분석 지원 ·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·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·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·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 ·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·분석 지원 ·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에 관련된 의정 활동 지원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윤리의식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 지향마인드(공복의식, 친절) ○ (직급별 역량) 기획력, 판단력, 의사소통능력, 과업이해력 ○ (직렬별 역량) 정보관리능력, 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력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지방의회와 입법·정책지원 등에 대한 지식 ○ 담양군 정책, 예산, 현안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지식 등
-------------	--

응시 자격 요건	* 다음(1.~3.)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u> 2. 3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u>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u> [관련분야 실무경력] - 국회, 지방의회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출자·출연기관, 대학교, 대학원, 연구소(대학 및 민간연구소 포함) 등에서 행정, 법무, 재정, 정책기획·개발·분석, 감사, 지방자치, 통계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
-------------------------	--